



「2024년 상반기 경찰공무원시험대비」

형사법 난이도별 모의고사 및 풀이(1)

| 오상훈 교수 | 박문각 경찰 노량진학원



※ QR코드를 통해
"형사법의 끝판
왕" 형사법 오상
훈 교수의 강의
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②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 ③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그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되었는데, 당해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그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2개월밖에 사육되지 않은 소의 경우 그 쇠고기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그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를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⑤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에 「배포」 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① O ② O ③ O ④ X ⑤ O

난이도 : 하 출제영역 : 서론
[해설] 정답 : ②

- ⑥ (X)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판 2011.6.23, 2008도7562 전원합의체).
- ⑦ (O) [당직의료인사건] 대판 2017.2.16,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 ⑧ (X) [횡성한우사건]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 해당 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육되면 비로소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이라도 일정 기간 사육된 소의 경우 쇠고기에 해당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와 같은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2.10.25, 2012도3575).
- ⑨ (O) 「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 항로 ≠ 지상이동경로
- ⑩ (X) 처벌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배포」 행위를 복제행위 등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9.3.26, 97도1769). ※ 복제 등 ≠ 배포

02.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

- ② 한국인乙이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는 국내에서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③ 형법 제7조의 문언상 외국에서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 법조를 직접 적용할 수 있지만, 유추적용을 통하여 그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④ 내국 범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그 내국 범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범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자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난이도 : 하 출제영역 : 서론
[해설] 정답 : ④

- ⑤ (X) 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21.9.16, 2019도11826).
- ⑥ (X)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 대판 2017.8.24, 2017도5977 전원합의체
- ⑦ (X)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을 구하는 사건〉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을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대판 2017.8.24, 2017도5977 전원합의체). ⇒ 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 X
- ⑧ (O) 대판 2017.3.22, 2016도17465 ※ 제6조의 보호주의 적용판례: 살인죄,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

03.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무유기죄는 직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직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직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별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적으로 하는 위험법이고,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야 한다.
- ③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 범 또는 즉시범이다.
- ④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

주행위가 종료하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난이도 : 하 출제영역 : 범죄론
[해설] 정답 : ②

- ① (O) 대판 1997.8.29, 97도675 ※ 계속범
- ② (X)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 협박사건]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적으로 하는 위험법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①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②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 ③ (O) 대판 1986.7.8, 84도2922
- ④ (O) 대판 1991.10.11, 91도1656

04. 법률의 변경에 의해 구법과 신법의 형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람을 불법하게 감금하고 있는 중에 감금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 ② 강도죄를 범한 후 강도죄의 법정형을 가볍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후에 다시 그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된 경우, 두 번째 법개정에 의한 법정형이 행위시의 법정형보다도 가벼운 때에는 최신법인 두 번째 개정법이 적용된다.
- ③ 甲과 乙이 피해자 A로부터 금원을 사취할 것을 공모한 다음 우선 甲이 A를 기망한 후에 사기죄의 법정형을 가볍게 하는 법개정이 행해져서 시행되었고, 그 후에 계속해서 乙이 甲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A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甲에게는 구법이 적용되고 乙에게는 신법이 적용된다.
- ④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현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난이도 : 중 출제영역 : 범죄론
[해설] 정답 : ④

- ⑤ (X)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1994.10.28, 93도1166).
- ⑥ (X)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제1, 2 심판시법의 세 가지 규정에 의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대판 1968.12.17, 68도1324).
- ⑦ (X)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고 할 때의 "행위 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한다(대판 1994.5.10, 94도563). ⇒ 甲의 기망 후 乙이 금원을 교부받은 때 까지 사기죄의 실행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甲과 乙 모두에게 사기죄 행위시법인 신법이 적용된다.
- ⑧ (O)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현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18.11.29, 2016도14781).